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

조 정 조 서

사 건 [redacted] 손해배상(기)

원 고 [redacted]

피 고 1. [redacted]

2. [redacted]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효동

조 정 장 판 사 [redacted] 기 [redacted]

조 정 위 원 [redacted] 장 [redacted]

법 원 주 사 [redacted] 공개 여부: 공 개

원고 소송대리인 [redacted] 출석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효동 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6. 11. 13.까지 원고에게 6,500,000원을 지급한다.

2.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
3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4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